

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제정이유서

의안번호	168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3. 2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정의 이유

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-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
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
- 동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
사업소세를 면제

3. 관 계 법 령 : 지방세법 제7조